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10. 4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6. 10. 4

다. 상 정 일 자 :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96.10.18)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노홍대 건설과장)

가. 제안이유

풍수해 대책법이 대통령령 15033호 1996. 6. 7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에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구청장), 차장(부구청장), 본부원을 두고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운영.
- 재해대책본부는 5급이상 재해관련 기관 및 국영기업체 직원으로 구성
- 재해대책본부는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사항,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신설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재난관리법 제9조의 지역안전 대책위원회와 대통령령이 정한 풍수해 재해대책 본부 등을 구분 운영함은 구성원이 비슷하므로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